

2019년도 제2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2. 16.(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최승수,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19-28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000건(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4270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2145호는 공개였다가 비공개로 전환된 밴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해당 밴드를 회원 가입만 하면 볼 수 있는 카페 게시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19-162146호~162151호는 소셜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밴드에서 소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불법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부분(본문)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소셜(파일)을 실제로 전송한 부분(댓글)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19-162152호~162230호는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밴드에서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해당 밴드에서 복수의 불법복제물이 제공되고 있는 점, 해당 밴드의 폐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19-162231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16223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164253호~164270호는 자막공유 사이트에서 우리말로 무단 번역한 자막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하나, 번역된 자막이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일부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삭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7,61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계정 520건(안건번호 제2019-7768호~8287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325개 안건은 가결하고, 동일 게시물에 대해 중복으로 청구한 8개 안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28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9개는 부결(부결사유 중복 12건)하고, 16개 저작물(총 32개 계정)에 관해서는 “IFTA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의 특정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exclusive license’ 또는 ‘exclusive distributorship’의 국내법적 의미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90회 저작권보호 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8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 원안과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함.
- B 위원 : 이견이 없으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함.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4270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8,000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223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밴드에서 영화, 소설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2145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밴드들은 과거 공개 밴드로 확인된 바 있음. 하지만 그 후 밴드와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고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비공개 밴드로 전환되었음. 보호원 모니터링 직원이 해당 밴드들이 공개밴드로 운영되고 있을 때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폐쇄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모니터링한 사안임. 해당 안전은 총 204개 안전, 232개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지속적으로 영화 불법복제물을 공유하고 있는 밴드임. 해당 밴드 소개에는 “밴드와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해당 밴드는 최초 모니터링했을 때는 공개 밴드였으나 현재는 초대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밴드로 변경되었음.

(안전번호 제2019-161944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밴드는 밴드명, 밴드 소개글만 보아도 어문저작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밴드 소개에는 “밴드와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2019. 12. 1. 기준 2,210명임.

안전번호 제2019-161995호~162145호의 해당 밴드들 역시 밴드명만 보아도 소설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 D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1995호~162145호 안전과 같이 밴드명만 보더라도 불법복제물 공유를 위해 개설된 밴드임을 알 수 있다면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1943호 밴드는 최초로 어떻게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과거 해당 밴드는 공개형 밴드였기 때문에 보호원이 검색하여 자체 모니터링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200명 정도로 많지 않았으나, 현재 회원 수가 1,000명으로 증가하였음.

- C 위원 : 검색해서 찾을 수 없는 밴드는 모니터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다만,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밴드가 폐쇄형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모니터링을 하되 그 후에는 회원 탈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D 위원 : 과거 심의위원회는 밴드명 자체만으로도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을 엄격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기로 정리한 바 있음. 안전번호 제2019-161944호~162145호 해당 밴드들은 밴드명만으로도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생각함.

다만,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1943호에 해당하는 밴드는 밴드명

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밴드를 모니터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1943호 밴드에 대한 시정권고 이력을 제시하면서)시정권고 이력을 확인해보면 해당 밴드는 이미 141회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음. 해당 밴드의 최초 채증 일자 2019. 4. 15.이고, 최초 등록 일자 2019. 4. 17.임. 파일 목록을 보면 영화 '이스케이프룸', '글래스'가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과거 해당 밴드 소개에는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2019. 4. 15. 기준으로 247명이었음.
- C 위원 : 해당 밴드는 파일 목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B 위원 :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기존의 심의위원회 입장은 어떠한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우리 심의위원회는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심의하여 왔음. 2019. 4. 개최한 전체심의위원회에서 밴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밴드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밴드에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밴드의 특성을 종전과 같이 엄격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음.

- D 위원 : 순수한 의미의 동호회처럼 저작물을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공유하는 수준이라면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하기로 정리한 바 있음.
- B 위원 : 공개 밴드에서 비공개 밴드로 전환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정리가 되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금번 심의 안건과 유사하게 공개형 밴드로 운영되고 있다가 폐쇄형으로 전환된 밴드를 계속하여 모니터링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2019. 12. 개최된 전체심의위원회는 폐쇄형 밴드로 전환된 후 이미 회원으로 가입된 모니터링 직원이 모니터링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자나 가입자들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2146호~162151호는 소셜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밴드에서 소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제공을 요청하는 부분(본문)과 불법복제물을 실제로 전송한 부분(댓글)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밴드 소개에는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2019. 12. 2. 기준 1,000명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2152호~162230호는 밴드에서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미 11회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음. 최초 채증 일자는 2019. 8. 12.임.

- D 위원 : 해당 밴드는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하지만 해당 밴드는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게시물을 볼 수 있음.
- C 위원 : 동일한 사람이 반복해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음.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시정권고를 통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2206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밴드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영화 ‘접전: 갑을 전쟁’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밴드 소개에는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안전번호 제2019-162215호~162219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밴드는 최신 영화인 ‘가장 보통의 연애’, ‘82년생 김지영’, ‘얼굴없는 보스’, ‘크롤’, ‘크리미널 : 해튼가든’을 각각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 홈페이지에서 영화 제목을 검색하면 해당 밴드들이 검색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가입을 하지 않고도 밴드 검색창에서 영화 제목을 검색하면 해당 밴드들이 검색됨. 참고로 밴드에서의 영화 제공 기간

은 30일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223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2230호는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함이 타당함.
- D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다만 종전에 공개 밴드였다가 사후 비공개 밴드로 전환된 밴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방식, 모니터링 기간 등에 대해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2415호 밴드는 회원 가입만 하면 볼 수 있는 카페 게시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안전번호 제2019-162146호~162151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안전번호 제2019-162152호~162230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영화,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점, 해당 밴드는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회원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어 폐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2230호 모두 가결 의견임.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다만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2145호는 공개 밴드에서 비공개 밴드로 전환된 경우로 가결 의견이나, 비공개 전환 밴드의 경우는 일정 기한 등의 제한을 두고 그 이후로는 더이상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223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223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한 화 전체분량을 블로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참고로 '원피스'는 일본 후지TV에서 1999. 10. 20.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피스'는 900화부터 912화로 2019. 9.부터 방영된 최신 회차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6223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2231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223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2232호는 권리자인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소설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6223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해당 소설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223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설 불법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223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19-164253호~164270호는 민원인이 신고하여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자막공유사이트의 이용자가 민원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해외영화의 자막 파일을 무단 전송한 18개 게시물임. 해외 영화의 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우리말로 번역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화 ‘지오스톰’, ‘쿵: 스킵 아일랜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메가로돈’ 등을 각각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안전번호 제2019-164256호~164261호, 제2019-164266호~164267호, 제2019-164269호~164270호는 이미 삭제된 게시물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64253호~16427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4253호~164270호는 공정이용 등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우리말로 무단 번역한 자막이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D 위원 : 자막공유 사이트에서 이미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다만 자막공유 사이트 내 직접 번역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C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4253호~164270호 중 직접번역을 한 자막파일이 독립적으로 제공된 경우에 한해서는 시정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 외 안전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4253호~164270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2233호~164252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음악 'HIP (가수: 마마무(Mamamoo))'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2272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14. 발매된 최신곡으로 앨범 'reality in BLACK'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 중 한 명인 화사가 작사 및 작곡을 하였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100개의 최신 인기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악저작물은 웹하드에서 44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음악 'New York (가수: 불빨간사춘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2285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27. 발매된 최신곡으로 앨범 'New York'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 중 한

명인 WH3N(웬)이 작사 및 작곡을 하였음. 웹하드에서 해당 최신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게임 '도쿄 구울 re CALL to EXIST'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2375호는 2019. 11. 15. 출시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6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54,800원에 판매 중이며 배급사는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임. 해당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 불가임.

(방송 '탐사보도 세븐(2017)'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2784호는 2019. 10. 25. 방영한 우리나라 시사, 교양을 웹하드에서 5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TV조선 채널에서 2017. 8. 30.부터 금요일 오후 10시에 방영 중임. 안전번호 제2019-162784호의 채증 일자는 2019. 11. 17.이나 시스템 등록 일자는 2019. 12. 6.임. 불법복제물을 모니터링 일자와 시스템 등록 일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이유를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업무 과중 때문이라고 함.

(방송 '수미네 반찬(2018)'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2795호는 2019. 9. 4. 방영한 우리나라 예능을 모바일 웹하드에서 75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tvN 채널에서 2018. 6. 6.부터 수요일 오후 8시 10분에 방영 중임. 안전번호 제2019-162795호의 채증 일자는 2019. 11. 15.이나 시스템 등록 일자는 2019. 12. 5.임. 마찬가지로 담당자의 업무 과중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함.

(영화 '얼굴없는 보스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3277호는 2019. 11. 21.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웹하드에서 14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현재 상영 중(2019. 12. 12. 기준)임.

(영화 '겨울왕국 2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63280호는 2019. 11. 21. 개봉한 미국 시리즈 영화를 웹하드에 서 15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현재 상영 중(2019. 12. 12. 기준)이고, 최근 불법복제물로 다수 발견되고 있음.

- C 위원 :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은 자막이 포함되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 제목에 '무자막'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자막은 함께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영상 속 워터마크에 해외 사행성 사이트 주소가 보임.

(영화 '허슬러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63281호는 2019. 11. 27. 개봉한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3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현재 상영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어자막을 포함하고 있으며, 게시자는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하슬러'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물을 업로드 한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62233호~16425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해당 안건들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며,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 C 위원 : 모두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채증 일자와 시스템 등록 일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주의가 요구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2233호~164252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4253호~164270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안전번호 제2019-161942호~16425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8쪽부터 3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7768~8287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325개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동일 게시물에 대한 중복 청구 게시물 8개 안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28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9개(부결사유 중복 12건)는 부결하고, 제출된 계약서상 “IFTA 국제표준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권리주장 저작물 16개(총 32개 계정)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20.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오영주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